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 정	:	2008. 3. 1.
개 정	:	2009. 3. 1.
개 정	:	2011. 5. 1.
개 정	:	2012. 6. 22.
개 정	:	2013.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불교문화연구소 내에 설치한 인문한국연구센터(이하 “HK센터”라 한다)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HK센터의 조직과 그 조직이 수행하는 HK사업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HK센터의 조직) ① 불교문화연구소장이 HK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HK센터장은 HK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지원 기간동안 연임할 수 있다.

② HK센터에는 HK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HK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HK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HK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HK센터에서는 연구팀을 설치하고 팀장을 둔다.

④ 팀장은 팀별 연구진행상황과 팀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한다.

⑤ HK센터의 기타조직은 소장의 판단 하에 총장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HK교수 2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기획관리처장, 교학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불교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HK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HK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HK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HK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HK센터의 연구업적 및 연구소 제반사항을 연1회 이상 평가한다.

- 제6조(기획위원회)** ①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HK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HK사업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연차별·반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③ HK사업의 일상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④ 삭제 <2013. 5. 1.>

- 제7조(HK연구인력)** ① HK연구인력은 HK교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HK연구인력의 정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HK교수’라 함은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된 연구전임교원을 말한다.
2. ‘HK연구교수’라 함은 HK사업에서 정한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교원을 말한다.
3. ‘일반연구원’이라 함은 HK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교내외 전임교원 및 박사학위이상 소지 연구자로서 비상근 연구자를 말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HK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선발한 학부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8조(HK교원의 인사)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비중앙관리) HK센터의 연구비 집행은 산학협력단이 관리한다.

- 제10조(세부사항)** ① HK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HK사업 관리운영지침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장은 이 규정의 시행이나 기타 HK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진행된 HK사업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중 제7조 2항 3호에 대하여는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